

[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1차 개정]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	비고
<p>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</p> <p><u>(중 략)</u></p> <p>V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</p> <p>1. ~ 4. 생략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(중 략)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</p> <p><u>(중 략)</u></p> <p>V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</p> <p>1. ~ 4. 생략</p> <p>5.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권</p> <p>-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8조의3에 근거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리 보관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 그 결과에 대해 통지합니다.</p> <p>6.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</p> <p>-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 시,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,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·주소·연락처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7.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</p> <p>-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8. 연락중지 청구권</p> <p>-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u>(중 략)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부칙(2026.04.13)</p> <p>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6.04.13 부터 시행한다.</p>	<p>조문정비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추가 명시</p>